

사회복지법인 지인 회의록

■ 법인 이사회 회의

1. 일시: 2016년 9월 22일, 낮 12시
2. 장소: 담쟁이주간보호센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단길 50)
3. 인원: 총 이사 수 8명 출석 이사 수 5명 총 참석자 6명(감사 1명 포함)
4. 회의 순서 및 내용
 - 정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이사장 인사
 - 의안 심의
 - 폐회

안 건	제 1호: 외부이사(윤경희 이사) 선임 건 제 2호: 2016년도 제1차 담쟁이주간보호센터 추가경정 예산 승인의 건 제 3호: 2016년도 제1차 사회복지 법인 지인 추가경정 예산 승인의 건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보고 및 개회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8명중 5명과 감사 1명이 참석으로 정족수가 충족되어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 - 이사장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인사와 함께 지난여름(7월 말) 담쟁이주간보호센터의 마당에 차양 설비를 설치하였음과 10월 6일 하루카페 행사를 안내드림. - 의안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호의안: 외부이사(윤경희 이사) 선임 건 * 대표이사: 윤경희이사 선임 건은 지난번 정기이사회(2016년3월23일)에서 논의, 의결하였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재의결을 요청드리는데는 외부이사 선임 규정에 따르지 않아서 재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즉 재선임시에도 포항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외부이사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받아 선임하여야 함에도 이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2016년3월23일) 이사 임기를 다른 이사님의 임기 만료시점과 동일하게 2016년 4월 17일에서 2017년 10월 19일로 1년 6개월로 의결하였으나 '포항시지사협 2016-123 (2016.8.26.)' 공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

인의 사외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2에
형식으로 선임하면 제18조 제4항에 따라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
는 바,

- 법률에 의한 규정한 이사의 임기를 법인이 임의로 단축할 수 없
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기를 법률 규정대로 재의결하여야 합니다.

포항지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대표이사~~ 추천하신 분은 서득수님과 윤경희
님 입니다. 두 분 중에서 적절한 분을 추천 바랍니다.

* 조형석이사: 윤경희님은 이미 3년 동안 적회 법인을 위해 노력하
셨고 이사로서 좋은 제안도 많이 하셨으므로 재선임을 추천합니다.

* 이원호/구연호이사: 모두 찬성합니다.

* 대표이사: 이사 분들께 외부이사로 윤경희이사 재선임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 그리고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승인도 요청함.

* 조형석/구연호/이원호이사: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 듯 합니다. 원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 참석이사 전원 이견이 없어 박수로서 외부이사로 윤경희이사 선
임 안을 통과시킴.

- 윤경희 이사 재선임

- 이름: 윤경희 ()

- 주소: .

- 임기: 2016년4월17일 - 2019년 4월16일 (3년간)

※제 2호 의안: 2016년도 제1차 담쟁이주간보호센터 추가경정 예산 승
인의 건

* 대표이사: 미리 배포된 2016년도 제1차 담쟁이주간보호센터 추
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총괄표 내역과 추가경정 사유 (세입부분에서
이용료 수입감소, 센터 인력충원에 따른 운영비(보조금)증액과 이에
따른 법인 보조금 감소,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지정후원금 수입증대,
세탁기, 의자 등 지정후원에 의한 재산조성비 증액, 차량설비에 의한
시설장비 유지비 증액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함.

* 대표이사: 이사와 감사 분들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나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

* 이복우감사: 보조금 수입이 108백만원에서 141백만원으로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대표이사: 현재 담쟁이주간보호센터의 교사는 4명으로 올해 초 3
명에서 1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포항사에서 원래 교사정원은

	<p>5명인데 3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4명으로 되었고, 1명 추가 선발에 따른 그 인건비가 반영되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184백만원으로 지출을 보시면 인건비가 147백만원으로 80%를 차지함. 나머지는 사업비로 33백만원임. 사업비는 타기관의 2배 정도로 이용자의 재활치료, 교육지원사업 등에 사용됩니다.</p> <p>* 대표이사: 이사와 감사 분들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제차 요청함.</p> <p>* 구연호/조형석/이원호/윤경희이사: 모두 찬성합니다.</p> <p>* 참석 이사 및 감사 전원 이견이 없어 박수로써 2016년도 제1차 담쟁이주간보호센터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킴.</p> <p>※제 3호 의안: 2016년도 제1차 사회복지 법인 지인 추가경정 예산 승인 의 건</p> <p>* 대표이사: 미리 배포된 2016년도 제1차 사회복지 법인 지인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총괄표 내역과 추가경정 사유 (수입부분에서 후원금 증액과 텃밭 매입예산이 작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됨과, 지출부분에서 텃밭매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 제세공과금 증가, 보조금 지원에 따른 담쟁이주간보호센터 전출금 감소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함.</p> <p>* 대표이사: 이사와 감사 분들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p> <p>* 구연호/조형석/이원호/윤경희이사: 모두 찬성합니다.</p> <p>* 참석 이사 및 감사 전원 이견이 없어 박수로써 2016년도 제1차 사회복지 법인 지인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킴.</p>
<p>의결사항</p>	<p>제 1호 의안: 외부이사(윤경희 이사) 선임 건: 원안대로 의결함</p> <p>제 2호 의안: 2016년도 제1차 담쟁이주간보호센터 추가경정 예산 승인 의 건: 원안대로 의결함</p> <p>제 3호 의안: 2016년도 제1차 사회복지 법인 지인 추가경정 예산 승인 의 건: 원안대로 의결함</p>
<p>기 타</p>	

2016 년 9 월 22일

사회복지법인 지인

대표이사

강기봉



(인)

이사 윤경희



이사

구연호



(인)

이사 이원호



이사

조형석



(인)

감사 이복우

